

『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9일

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1조)
- 조직명칭 변경 반영(안 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6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정보화마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을 명시,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